

2015-03

정책연구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정영태

Bandu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정 영 태

발 간 사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으로써 사회복지분야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개개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개편되어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급여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앙부처와 사무이관에 따른 복지사업간의 유사·중복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2005년을 기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노인·장애인복지, 영·유아 및 청소년, 여성, 공공의료 등 관련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양된 복지사업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의 경우 전국 자치단체별로 대상이나, 지원 금액 등이 서로 다른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비교에 앞서 제주 지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급여를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급여의 지역별 격차 감소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목적

- 정부는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9년 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성이 있는 90개 사업을 정비 159개 사업으로 조정을 단행하는 등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왔음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 제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을 분석하여 보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현황 등을 제시함
- 제주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최근 5년간 현금성급여 실태를 분석하고, 현금성 급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사회보장과 복지급여

1.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복지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의무'를 비롯하여 국고보조사무 가운데 67개의 사회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 이양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보호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기타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 사회복지제도는 취약계층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 등 현금성 급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의료와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물성 급여가 함께 발전해왔음
- 현금성 급여(cash)와 현물성 급여(in-kind)는 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지급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음
- 최근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의 대안으로 바우처(Voucher)제도가 확대되고 있음

3. 중앙정부와 사회보장 사업

- 복지수요의 증가로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이 2015년 현재 정부 예산의 30%에 이르는 115조 이상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9개 부처 249개 복지사업을 전면 정비, 159개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 저출산·고령화, 무상보육·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신규 사업 도입으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360개로 증가하였음

Ⅲ.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업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일반 현황

- 2015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본 예산의 규모가 전년보다 12.6% 감소한 결과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4% 감소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2014년 말 기준 607,346명(외국인 제외)으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31%, 영유아 6.96%, 청소년 20.65%, 노인 13.57%, 저소득한부모가족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 현금성 추진 사업은 대상별로 보면 영유아, 아동·청소년, 조손가정, 장애인, 노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장수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중증장애인교통비, 1급 장애인 추가수당, 가정위탁아동월동대책비, 가정위탁아동문화활동비,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아동복지시설 아동교통비,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비, 아동 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 구입비, 아동복지 시설 아동문화활동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정서교육비, 아동복지시설 아동대학입학금, 아동복지시설 명절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상해보험 가입, 장애아동전문(통합)어린이 집 교사 수당,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 읍면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지원,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 등 28개 사업이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과 사회보장사업 비교

- 전체 현금성 지원사업은 보전적 수당의 성격으로 주로 인건비, 생활안정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그 밖에 조손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IV. 요약 및 제언

1. 연구요약

- 제주특별자치도의 현금성 급여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인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8,861명, 아동복지시설 아동 5,644명, 장애인 13,901명, 가정위탁아동 892명이 직접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으며,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 시설 지원은 보육 교직원 및 종사자 총 35,172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2.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보장사업과 관련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과 대상이나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임
-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보장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장사업과 관련 전반 분석, 사회보장사업의 명칭 및 대상자에 대한 재정비, 현금급여의 현물급여 전환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주요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연구의 한계	4
II. 사회보장과 복지급여	5
1.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5
2.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8
3. 중앙정부 사회보장 사업	10
III.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업 현황	16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일반 현황	16
2.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현황	18
3.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과 사회보장사업 비교	43
IV. 요약 및 제언	54
1. 연구 요약	54
2. 제언	57
부록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구분>	60
참고문헌	66
Abstract	67

표 목 차

<표 II-1> 2005년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5
<표 II-2>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개념의 재구성	7
<표 II-3>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학자별 견해	9
<표 II-4>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바우처 특징	10
<표 II-5> 정부 복지예산 증가 추이	11
<표 II-6> 사회보장사업의 부처별 현황	12
<표 III-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16
<표 III-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현황(대상별)	17
<표 III-3> 장수수당 지원규모(2010~2014)	18
<표 III-4> 65세 이상 노인 목욕료 지원규모(2010~2014)	19
<표 III-5> 65세 이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규모(2010~2014)	20
<표 III-6>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규모(2010~2014)	21
<표 III-7> 1급 장애인 추가 수당 지원규모(2010~2014)	22
<표 III-8> 가정위탁아동 월동대책비 지원규모(2010~2014)	23
<표 III-9>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규모(2012~2014)	25
<표 III-10>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지원규모(2013~2014)	25
<표 III-11> 아동복지시설 아동교통비 지원규모(2010~2014)	26
<표 III-12>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비 지원규모(2011~2014)	27
<표 III-13>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 지원규모(2010~2014)	28
<표 III-14>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구입비 지원규모(2010~2014)	29
<표 III-15>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비 지원규모(2010~2014)	30
<표 III-16> 아동복지시설 아동정서교육비 지원규모(2010~2014)	30
<표 III-17>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규모(2010~2014)	31
<표 III-18> 아동복지시설 명절부식비 지원규모(2010~2014)	32
<표 III-19>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규모(2013~2014)	33
<표 III-20>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지원규모(2010~2014)	34

<표 III-21>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규모(2010~2014)	35
<표 III-22>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2010~2014)	36
<표 III-23>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2012~2014)	37
<표 III-24>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원(2010~2014)	37
<표 III-25>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2010~2014)	38
<표 III-26>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2012~2014)	39
<표 III-27>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지원(2014)	40
<표 III-28> 조손가정수당(2010~2014)	40
<표 III-29> 조손가정 아동 학습수당(2010~2014)	41
<표 III-30>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분류 및 분류기준	43
<표 III-31> 지자체 사업 유형	44
<표 III-32>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분석	45
<표 III-33>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와 중앙부처 사업 비교	47
<표 III-34> 2014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정상적 수요사업)	49
<표 III-35> 2014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비정상적 수요사업)	50
<표 III-36> 법령상 보조금 사업(복지분야)	51
<표 IV-1> 유사성이 발견되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58

그림 목 차

[그림 Ⅲ-1]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지원 현황 46

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함께 1990년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며 근대적 복지제도의 외형이 갖추어졌음
 - “복지”는 소비라는 기존 입장에서 2000년대 국민의 의식의 향상과 복지 욕구 증가로 복지패러다임이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음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작으로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이동되면서 2012년 무상보육, 2014년 기초연금, 장기요양보장제도 등이 서비스 되고 있음
 - 자치단체별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추가연금 및 자립지원서비스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지역시책이 추진되면서 복지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9년 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성이 있는 90개 사업을 정비하여 159개 사업으로 조정을 단행하는 등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음
- 박근혜정부의 고용과 복지 연계, 저출산·고령화 대응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복지와 관련된 영역이 확장되면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관련 예산은 2015년 110조를 넘어섰고, 전체 예산의 약 30%까지 확대 되었음
- 그러나, 2015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기에 이르렀음
 - 지역별 개별 복지사업의 현황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평균 377개의 사업이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하여 보고자 함
- 특히, 지방과 중앙의 사업비 분담에 따른 공통복지사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순수 지방비로 추진되는 현금성 급여만을 우선 분석하고자 함
- 무엇보다 복지사업 가운데 현금성 급여를 우선 분석하는 것은 사회보장과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지역 차원에서 신설·변경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범주를 사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우선, 복지정책 가운데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함
 - 사회보장과 관련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바우처 등은 서로 다른 정책의 효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별 정책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함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현황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반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제주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최근 5년간 현금성 급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넷째, 지역 특화 사업으로써 현금성 급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분야의 현금성 급여와 관련 기존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중복을 검토하여 유사 사업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과의 차별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 본 연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논의 틀을 검토하고자 함
- 현금 급여 및 현물 급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차원의 복지전달 체계 수립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

2)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상별·분야별 현금성 급여 분석
- 연구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 설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4.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사회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금성 급여만을 분석하였음
- 제주지역 자체 재원을 통한 복지사업과 관련 연구가 처음 수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음
 - 우선, 본 연구는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 분석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시책인 현금성 급여만이 본 연구의 대상임
 - 둘째, 현금성 급여 대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함에 따라 대상자별로 정책 체감도를 계량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셋째, 본 연구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향후 분야별 사회보장사업의 전달체계 개편 논의 등 추가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II. 사회보장과 복지급여

1.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의무’를 비롯하여 국고보조사무 가운데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 이양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보호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기타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II-1> 2005년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분야 (사업수)	세부사업	
취약계층 보호 (6)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노숙자 보호 ·쪽방생활자지원	·모부자복지시설운영 ·모부자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미혼모중간의집운영
노인복지 (13)	·경로당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회관운영 ·노인복지회관신축 ·노인시설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치매상담센터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장애인복지 (26)	· <u>공동생활가정운영</u>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생활설치치과유니트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표 II-1> 2005년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계속)

분야 (사업수)	세부사업	
장애인복지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의료재활시설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운영 ·<u>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u> ·장애인복지관운영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지원 ·<u>정신요양시설운영</u>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체육관운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 ·정신지체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설치센터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장애인가동달팽이관수술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u>장애인생활시설운영</u>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사회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위탁양육지원 ·가정위탁센터운영 ·결식아동급식 ·결연기관운영 ·소년소녀가장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시설운영 ·입양기관운영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결연기관컴퓨터(PC)구입비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장비구입)
기타복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봉사사업 ·공공보건인력개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관기능보강 ·사회복지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공공보건사업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주1) 굵은글씨 : 2015년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주2) 2015년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피해아동보호 예산은 범죄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에 반영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신의 지역주민 및 지역 내 복지대상자,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현금·현물·서비스로 이루어진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 재정을 기획·전달·제공하는 것으로써, 공식적인 예산 계획 내에서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 혹은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은 주제, 운영, 유형,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과 내용이 결합되고 있으며, 사업의 실천 현장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일정 비율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서 투입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임

<표 II-2>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개념의 재구성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주체 Position		운영 Management		유형 Type		내용 Program	
요소 (PMTP)	분권	●	구조	▲	재원	●	상품	▲
	현장	▲	방식	●			대상	▲
			시점	▲			자격	▲
							기간	▽
							공간	▽
							방식	▽

주 : ▲ 기준보다 강한 의미, ● 기준과 같은 수준 의미, ▽ 생략된 의미
 자료 : 함영진 외(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 통합관리 체계 방안 마련 연구. p.31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로 시스템(<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약 12천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시·군·구 당 평균 50여 개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전수조사 결과의 경우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총수가 약 40,000

여 개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조사 당시 약 5,0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정보의 관리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사업 실태 조사 결과)

2.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 사회복지제도는 취약계층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 등 현금성 급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의료와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물 급여가 함께 발전해왔음(김태완 외, 2013)
- 현금성 급여(cash)와 현물성 급여(in-kind)는 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지급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음
- 우선, 현금성 급여의 장점은 크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폭이 크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음
 - 둘째, 현금성 급여는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상대적으로 가능함
 - 셋째, 현금성 급여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함
 - 넷째, 현금성 급여를 위한 사업 운영비가 수혜자의 통장 등을 통해 직접 전달하므로 전달체계 등의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음으로 현물성 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특정 욕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목표효율성이 높음
 - 둘째, 전달체계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관리의 효율성과 수혜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어 정치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함

- 셋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반면, 현물성 급여의 단점은 크게 4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소비의 '강제화'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기결정이 훼손될 수 있음
 - 둘째, 현물성 급여는 모든 사람의 선택에 따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측정되어 서로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
 - 셋째, 현물성 급여는 수급자에게 낙인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현물성 급여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보관, 관리,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성 급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OECD 국가 가운데 스웨덴, 영국·미국 등의 경우 교육과 의료, 음식, 주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현물성 급여를 개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와 관련 연구자별 견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3>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학자별 견해

학자	구분	이유
프리드먼 (Friedman)	현금성 급여	- 사용자의 최적화된 선택으로 효율 극대화 - 사회서비스의 사회통제는 정책수립과 무관 -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서비스 다양화, 시장경쟁 유발 - 급여 제공시 수혜자 소득 직접 증가 - 낙인 효과 없음
미르달 (Myrdal)	현물성 급여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정부지출 절약 - 목표 인구집단별 정책 대응 용이 - 급여의 누수를 사전 통제 - 적절한 수준의 가구소득 보완적 기제로 활용

자료 : 김태완 외(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pp.24~25 재구성

- 최근 복지서비스와 관련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우처(Voucher)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바우처 제도는 현금성 급여의 소비자의 선택과 현물성 급여의 사회적 통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부터 공급자 위주의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표 II-4>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바우처 특징

학자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정책 효과성	낮음	높음	높음
수급자 선택권	높음	낮음	제한됨 범주만 가능
사회적 낙인	낮음	높음	보통
욕구	개별적 욕구	기본·공통욕구	기본·공통욕구
급여 오남용	높음	낮음	보통
운영비용	낮음	높음	보통

3. 중앙정부 사회보장 사업

1) 중앙부처의 주요 복지사업

- 복지수요의 증가로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이 2015년 현재 정부 예산의 30%에 이르는 115조 이상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표 II-5> 정부 복지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본예산	추경		
정부총지출 (증가율)	292.8 (2.9)	309.1 (5.5)	325.4 (5.3)	342.0 (5.1)	349.0 (7.3)	355.8 (7.3)	374.8 (5.5)
보건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81.2 (8.9)	86.4 (6.3)	92.6 (7.2)	94.4 (5.2)	99.3 (7.2)	106.4 (9.3)	115.7 (8.7)
보건복지분야 지출 /정부지출	27.7	28.0	28.5	28.5	28.5	29.9	30.9
복지부총지출 (증가율)	31.02 (9.4)	33.6 (8.2)	36.7 (9.3)	41.1 (11.9)	41.5 (13.0)	46.9 (14.2)	53.4 (14.0)
복지부지출/ 정부지출	10.6	10.9	11.3	12.0	12.0	13.2	14.3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나라살림개요. 각년도

-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9개 부처 249개 복지사업을 전면 정비, 159개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화, 무상보육·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 도입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360개로 증가하였음

<표 II-6> 사회보장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아동					성인					일 반	계
	영유 아	아동	청소년	아동 전체	소계	청년	중장 년	노년	성인 전체	소계		
경찰청	-	-	-	1	1	-	-	-	-	-	-	1
고용노동부	1	-	1	2	4	1	1	4	26	32	-	36
교육부	1	2	6	6	15	5	-	-	-	5	1	21
국가보훈처	-	-	-	3	3	-	3	8	20	31	3	37
국토교통부	-	-	-	-	-	-	-	1	12	13	1	14
금융위원회	-	-	-	-	-	-	-	1	3	4	-	4
기획재정부	-	-	-	-	-	-	-	-	2	2	-	2
농림축산식품부	1	-	-	2	3	-	-	-	5	5	-	8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1	1	2	3	5
미래창조과학부	-	-	-	-	-	1	-	1	4	6	3	9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1	-	1	2	3
보건복지부	14	4	-	22	40	1	3	19	38	61	39	140
산림청	-	-	-	-	-	-	-	-	3	3	-	3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4	4	2	6
소방방재청	-	-	-	-	-	-	-	-	1	1	-	1
안전행정부	-	-	-	-	-	-	-	-	2	2	-	2
여성가족부	-	1	14	10	25	-	1	1	5	7	12	44
중소기업청	-	-	-	-	-	-	1	-	7	8	-	8
통일부	-	-	-	2	2	-	-	-	6	6	2	10
해양수산부	-	-	-	-	-	-	-	-	1	1	1	2
환경부	-	-	-	1	1	-	-	-	2	2	1	4
총계	17	7	21	49	94	8	9	37	142	196	70	360

자료 : 강혜규(20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연계와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토론회 자료집. p.9

- 현행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유형별·대상별로 구분하면 크게 저소득 및 취약계층, 여성, 아동, 건강 및 질환, 재정지원,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부록 참조)

- 부처별로 다양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사·중복·누락·편중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및 관리에 있어 업무중복, 비효율성, 복잡성 등의 문제로 공급자와 수요자간 갈등 유발, 복지 체감도 저하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사업에 대한 중복논란은 2009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5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유사·중복사업 종합 정비”가 발표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간의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함에 따라 지역차원의 특수 시책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절충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3.1)을 통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7.시행)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정비안의 마련과 2016년부터 중앙 사업 예산연계를 통해 반영될 예정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11.19)은 1995년 제정된 이래 약 10여 차례 가까이 개정이 되었음
 - 당초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총 3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총칙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 4개의 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2012년 전면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함(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이하 법)

- 우선, 주요내용으로 사회보장 범주를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은 물론 출산과 양육을 포함하였음(제3조)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복지사로 포괄하여 확대하고,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함
-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6조)
 - 이와 함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역계획의 책무성을 강화함(제19조)
- 셋째,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법 제20조)
-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사회복지 보장,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법 제30조)
-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법 제32조)
 - 통계 작성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37조)

- 이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개정을 통해 생활보장으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유사·중복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짐
- 반면,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들 수 있음
 - 우선, 관련 법령간 상충으로 우선시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관련 법의 정비 등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사회보장기본법이 타법령에 비하여 우선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사회보장과 관련 분권이양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담의 경우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순수 사업비의 경우 조정하게 될 경우 자율성과 특수성이 훼손될 수 있음

Ⅲ.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업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일반 현황

- 2015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764,953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본예산의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약 13%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분야별 기능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전년 대비 예산 감소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보육·가족·여성, 보건 분야 등이 각각 감소하였음
- 반면, 취약계층지원사업, 노인·청소년지원사업, 노동, 보훈, 주택 관련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본예산)
제주도 총 예산규모	2,749,785	2,853,177	3,076,318	3,366,685	3,582,474	3,819,406
사회복지 예산	439,703	480,592	541,898	647,785	795,684	764,953
사회복지예산 비중 (제주)	16.0	16.8	17.6	19.2	22.21	20.03
재정자립도 (제주)	26.1	25.1	28.5	30.6	30.1	-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국평균)	19.0	20.2	20.5	22.3	24.5	-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2.2	51.9	52.3	51.1	44.8	-

자료 : 재정고. 각년도. 2015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관련 대상자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인구는 2014년말 기준 607,346명(외국인 제외)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자는 20,101명으로 전체 도민인구의 3.31%에 해당하며, 영유아인구는 42,262명으로 전체 도민인구의 6.96%에 해당됨
 - 청소년 인구는 125,417명으로 20.65%, 노인인구 82,411명으로 도민인구의 13.57%, 저소득한부모가족은 9,363명으로 도민인구의 1.54%를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인구는 32,989명으로 도민인구의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2,696명으로 0.44%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자원은 1,460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영유아·아동복지 분야의 경우 어린이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분야는 경로당의 비중이 높은 실정임

<표 Ⅲ-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현황(대상별)

(단위 : 개소)

구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영유아·아동복지분야	11	680	691
청소년복지분야	5	83	88
노인복지분야	64	491	555
장애인복지분야	30	38	68
여성복지분야	5	10	15
한부모복지분야	2	2	4
정신보건분야	1	4	5
노숙인지원	2	1	3
지역주민 복지		31	31
총계			1,460

자료 : 정영태 외(2014),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재구성

2.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현황

1) 장수수당

- 장수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 수당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함
- 지원대상은 80세 이상 노인이며, 거주지 읍면동으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5천원의 수당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임
 - 장수수당 지원 규모를 보면 2010년 13,104명에서 2014년 17,0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3,086,960백만원에서 2014년 5,364,019백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표 III-3> 장수수당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13,104	13,932	15,065	16,662	17,062
지원금액		3,086,960	4,099,785	4,423,947	4,823,900	5,364,019
재원	도비(%)	100	100	3	5.8	8.9
	복권기금(%)			97	94.2	91.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현행 장수수당의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의 현실성 부족
 - 둘째, 신청인의 타 지역 거주 이전·사망 등에 따른 환수조치의 어려움
 - 셋째,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2) 목욕료

- 목욕료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격월로 2회분의 목욕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 금액은 격월 12천원, 홀수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지원 되고 있음
 - 목욕료 지원 규모를 보면 2010년 4,507명에서 2014년 4,193명으로 대상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규모 역시 2010년 371,395백만원에서 2014년 346,738백만원으로 감소되었음

<표 III-4> 65세 이상 노인 목욕료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4,507	4,404	4,355	4,329	4,193
지원금액		371,395	369,790	358,823	374,290	346,738
재원	도비(%)	100	100	3	5.8	8.9
	복권기금(%)			97	94.2	91.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목욕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현금 지급에 따른 목적여부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둘째, 2015년 5월 도내 평균 목욕료(월간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동향)는 5,100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제주시내의 경우 평균 6천원, 서귀포시내의 경우 5천원으로 조사되고 있어 지원 규모에 따른 부분별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의 타 지역 거주 이전·사망 등에 따른 환수조치의 어려움이 있음

3) 이·미용료

- 이·미용료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 자체 사업 지침에 의거 제주도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 1개월 당 5천원씩 2개월의 지원금액이 홀수달(격월)마다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미용료 지원 규모를 보면 2010년 4,507명에서 2014년 4,193명으로 대상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규모 역시 2010년 357,965백만원에서 2014년 329,809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III-5> 65세 이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4,507	4,404	4,355	4,329	4,193
지원금액		357,965	361,587	341,768	354,104	329,809
재 원	도비(%)	100	100	3	5.8	8.9
	복권기금(%)			97	94.2	91.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이·미용료 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현금 지급에 따른 목적여부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둘째, 2015년 5월 도내 평균 이용료(월간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동향, 컷

기준)는 평균 10,400원으로 제주시내의 경우 1만원에서 1만2천원, 서귀포시내 1만원으로 실제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원금액의 현실성이 낮음

- 셋째, 2015년 5월 도내 평균 미용료(월간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동향, 컷 기준)는 평균 10,000원으로 제주시·서귀포시 각각 1만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원금액의 현실성이 낮음
-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의 타 지역 거주 이전·사망 등에 따른 환수조치의 어려움이 있음

4) 중증장애인교통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거 중증(1~3급)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입소자, 차량소유자 등은 제외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해당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읍면동 접수를 통해 행정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월 25천원을 본인계좌에 직접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은 2,103명에서 2014년 4,62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2010년 499백만원에서 2014년 1,231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표 III-6>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2,103	1,620	2,689	2,867	4,622
지원금액	499	478	595	832	1,231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의 낮은 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2015년 1월 기준 제주도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은 편도 1구간 1,300원에서 5구간 3,300원이며,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으로 현행 지원 금액의 경우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상한제 금액 8천원을 고려할 경우 평균 3.1회 정도의 이동 지원에 불과한 실정임

5) 1급 장애인 추가 수당

- 1급 장애인 추가 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 1급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급 장애인에게 수당을 추가지원하는 시책임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가 자동 선정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지원되는 전달체계로 월 20천원이 본인계좌로 직접 지원됨
- 1급 장애인 추가수당은 2010년 1,180명에서 2014년 1,1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2010년 274백만원에서 2014년 268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III-7> 1급 장애인 추가 수당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1,180	1,143	1,114	1,103	1,124
지원금액	274	287	274	264	268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시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급 장애인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최고 월 202,600원)과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아동수당(월 150,000원~200,000원) 외에 추가 지원되는 수당임
 - 현행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기초급여와 소득에 따른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6) 가정위탁아동월동대책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양육세대의 월동비를 지원하는 시책임
- 가정위탁아동 양육세대에 대하여 동절기 대비 세대별 월동대책비를 매년 11월에 지원하고 있음
- 연간 1회 150천원이 지원되며 가정위탁양육세대 계좌로 지원되고 있음
 - 가정위탁아동월동대책비는 2010년 270세대에서 2014년 273세대로 나타났으며, 지원금액은 2010년 40백만원에서 2014년 41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Ⅲ-8> 가정위탁아동 월동대책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세대수,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세대	270	283	265	264	273
지원금액	40	42	40	39	41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가정위탁지원 사업은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 중앙정부 차원의 가정위탁지원 사업은 아동 1인당 월 12만 원 이상(지방 이양)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등으로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이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등이 있음
- 그러나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이외 겨울철 난방비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특수시책임
 - 특히, 대리양육(조부모)과 친인척위탁가정 비율이 전체 위탁가정 274세대의 94%로 이 가운데 조부모의 비율은 74%를 차지함에 따라 조손가정 등 가구의 소득과 연계 위탁양육 환경을 건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됨에 따라 월동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7) 가정위탁아동문화활동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는 성격임
- 연령별·학령별 차등을 두고 있으며, 초등학생 월 2만원, 중등학생 월 3만원, 고등학생 월 4만원을 본인 계좌로 지원하고 있음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는 2012년 322명의 지원에서 2014년 288명으로 대상자는 감소하였으나, 지원금액은 2012년 75백만원에서 2014년 102백만원으로 확대되었음

<표 Ⅲ-9>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규모(2012~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322	282	288
지원금액	75	61	102
도비(%)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가정위탁아동문화활동비 지원은 2012년 신규 사업

8)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한 가정위탁아동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학습비로 학원비 등 정규수업의 보충적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연간 4개월, 월 7만원을 지원하며, 가정위탁아동 가운데 해당 거주 지역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행정사에서 지원을 함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지원사업은 2013년 20명에서 2014년 40명으로 확대 되었으며, 지원금액은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함

<표 Ⅲ-10>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지원규모(2013~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20	40
지원금액	7	9
도비(%)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가정위탁아동학습비지원사업은 2013년 신규 사업

- 위탁아동의 보충적 학습비 지원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지원기간과 관련 1년 중 4개월만을 지원함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의 경우 월 10만원씩 6개월을 지원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학습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액 및 지원 기간 등의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9) 아동복지시설 아동교통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교 통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임
- 지원 범위는 학교 통학을 위한 1일 편도 950원을 왕복으로 산출, 학교 등교일수(200일)를 산정하여 연간 38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본인계좌 1년 일괄 또는 분기별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교통비는 2010년 118명에서 2014년 139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액은 37백만원에서 44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함

<표 III-11> 아동복지시설 아동교통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118	118	120	114	139
지원금액	37	37	38	39	44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아동복지시설 아동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현금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버스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충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비 지출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

- 버스카드의 경우 교통비로만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버스카드(T머니카드)의 경우 일상생활 경비 등 복합 기능이 포함되어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10)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학원 수강에 따른 보충적 학습비 지원으로 연간 4개월 학습비가 지원되는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으로 아동 개별 계좌에 지원되지 않고 시설계좌로 입금되어 집행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비 지원은 2011년 109명에서 2014년 16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금액은 37백만원에서 46백만원으로 증가함

<표 III-12>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비 지원규모(2011~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109	110	130	163
지원금액	37	39	40	46
도비(%)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2011년부터 시행

- 대상자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4개월 단기 지원으로 지원 시기와 지원액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의 경우 월 10만원에 6개월을 지원하는 것과 차별이 있어 아동 학습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액 현실화 및 지원 기간 확대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11)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임
- 연간 1인당 3만원의 실비를 지원하며, 시설계좌로 입금하여 일괄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 지원은 2010년 248명에서 2014년 28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금액은 2010년 7백만원에서 2014년 8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표 III-13>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248	250	229	269	286
지원금액	7	7	7	8	8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12)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구입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별 학업증진을 위한 참고서(부교재) 구입비 지원 사업임
- 초등학생 3만원, 중등학생 5만원, 고등학생 6만원으로 연간 3~6만원을 지원하며 아동개인 지원이 아닌 시설계좌 입금을 통해 일괄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 구입비 지원은 2010년 240명에서 2014년 236명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지원금액은 10백만원임

<표 Ⅲ-14>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구입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240	236	226	212	236
지원금액	10	10	9	9	10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 구입비 지원의 경우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됨에 따라 시설 자체예산 또는 후원 등을 발굴하여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13)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일상생활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보조(용돈)로 초등학교 월 2만원, 중학교 월 3만원, 고등학교 월 4만원임
- 지원방법은 대상 아동 본인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비 지원은 2010년 232명에서 2014년 24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지원금액은 75백만원임

<표 III-15>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232	222	217	212	241
지원금액	51	49	48	47	75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14) 아동복지시설 아동정서교육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대상 정서교육 지원 사업임
- 수련회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연간 8만원을 시설계좌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정서교육비 지원은 2010년 280명에서 2014년 277명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지원금액은 23백만원임

<표 III-16> 아동복지시설 아동정서교육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280	277	274	277	277
지원금액	22	22	22	22	23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해당사업의 경우 시설입소 아동의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시설 중심의 자립지원 캠프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타지방 체험 등의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부족한 금액을 후원 등을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 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캠프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어 도내에서 추진하기보다 도외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금액에 비하여 추가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 정서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5)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금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운데 대학입학시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1회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본인계좌 입금을 통해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금은 지원 아동은 2014년 1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지원금액은 33백만원임

<표 Ⅲ-17>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11	14	12	13	11
지원금액	33	42	36	39	33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현재 대학입학금의 경우 도내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는 실정이며, 지원에 따른 등록금 납부확인서, 학기별로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16) 아동복지시설 명절부식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게 명절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1인 1만원 연 2회로 시설계좌 입금을 통해 명절 부식비 등을 보전적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명절부식비는 2010년 325명에서 2014년 319명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지원금액은 3백만원임

<표 III-18> 아동복지시설 명절부식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325	315	307	302	319
지원금액	3	3	3	3	3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시설에서 명절 시설 입소 아동을 위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 시 보조금전용카드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17)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시설별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입소아동명단 제출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며 1인 1일 1천원으로 1년 365천원이 지원되고 있음
- 지원방법은 대상 시설 계좌로 입금되어 집행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간식비는 2013년 296명에서 2014년 3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지원금액은 116백만원임

<표 Ⅲ-19>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규모(2013~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296	324
지원금액	64	116
도비(%)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

18)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상해보험 가입(*2015년 신규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으로 아동의 안전사고 등 불의의 사고 등 긴급복지를 위한 안전망으로 마련된 사업임
-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1인당 연간 65천원으로 입소아동 보험 가입에 지원예정임
- 2015년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으나,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부담으로 현재 중단된 사업임

19)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범위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특수교사 포함)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것임
- 보육교직원/보육교사 1인당 월 150천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지원규모는 2010년 52명에서 2014년 6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지원 규모는 114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표 III-20>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52	52	52	52	64
지원금액	74	74	74	74	114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추가 지원 사업은 장애아를 전담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처우개선 사업으로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임

20)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조리원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시설의 취사부에 대한 지원으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 중 아동현원 8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서 조리원을 2명 이상 고용

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개소당 1명을 지원하는 사업임

- 운전기사 지원은 운행차량 모두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임면보고된 자로 원장이 운전기사를 겸할 경우에는 제외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금액은 조리원의 경우 월 450천원, 운전기사는 인건비 지원시설 (영아전담시설 포함)의 경우 1인당 월 450천원을,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개소당 1인 월 1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조리원 및 운전기사 지원 규모는 508명에서 2014년 59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지원규모는 2014년 1,785백만원임

<표 Ⅲ-21>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규모(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리원, 운전기사	508	572	517	517	597
지원금액	1,592	1,609	1,645	1,645	1,785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취사부,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특수시책임

21)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에 의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업임
- 10인 이상 규모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임

-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0천원으로 시설 계좌 입금을 통한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0년 1,800명에서 2014년 580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금액은 2014년 209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III-22>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	1,800	1,800	1,800	580
지원금액	648	648	648	648	209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시설 지원을 통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특수시책임

22)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여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읍면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 교직원 의 교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금액은 1인 월 50천원으로 시설계좌 지원을 통해 시행하는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임
-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은 2014년 879명, 531백만원이 지원되었음

<표 Ⅲ-23>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2012~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육교사	879	879	879
지원금액	527	531	531
도비(%)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은 수당에 대한 보전적 사업으로 동지역에 비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에게 대한 처우개선 효과 및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채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 특수시책임

23)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능력향상비 지원 사업임
- 지원금액은 도시지역 보육교사 1인 190천원(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인 80천원(월), 원장, 조리원, 운전기사 등 1인 140천원(월)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방법은 계좌입금을 통해 현금지원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는 2010년 4,062명에서 2014년 4,458명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6,087백만원이 지원되었음

<표 Ⅲ-24>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원(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육교직원	4,062	4,336	4,458	4,458	4,458
지원금액	4,507	4,838	4,774	6,022	6,087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가운데 차량기사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당 월 1,000천원을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 재활동 등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규모는 2014년 4명으로 48백만원이 지원되었음

<표 III-25>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2010~2014)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	4	4	4	4
지원금액	48	48	48	48	48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5)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집행기준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사업임
- 지역아동센터별 종사자 1인 월 100천원을 시설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는 2014년 70개소, 186백만원이 지원되었음

<표 Ⅲ-26>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2012~2014)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아동센터	70	70	72
지원금액	84	86	186
도비(%)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가운데 사무비(인건비·운영비 등)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85%까지 편성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아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20% 미만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용아동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러나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분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에 따라 경상경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에 대한 예산 일몰이 예측되는 사업임

26)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집행기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급식 지원 사업임
-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채용에 따른 지원으로 1인 월 300천원을 시설 지원하는 사업임
- 2014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센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72개소에 대하여 258백만원이 지원되었음

<표 III-27>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지원(2014)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14년
지역아동센터	72
지원금액	258
도비(%)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7) 조손가정 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거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조손세대(2층)를 지원하는 사업임
- 대상자 및 사회복지직 등 공무원의 직권 신청 등을 통해 시청 통합조사팀의 통합조사를 통해 보호결정 통지에 따라 급여가 지원되는 사업임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조손세대에 대한 최저생활 지원으로 월 70천원을 본인 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임
- 조손가정 수당은 2010년 63세대에서 2014년 37세대로 급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2014년 24백만원임

<표 III-28> 조손가정수당 (2010~2014)

(단위 : 세대,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세대	63	66	60	54	37
지원금액	16	19	24	20	24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 상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1층)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2층)보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층 세대까지 지급 확대 개정된 사업임(2014 12.04 일부개정)

- 향후 당초 2층 세대에서 1층 세대, 2층 세대로 지원기준이 변동되었으며, 월 5만원 이상에서 월 12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 주양육자인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조부모의 보호를 통해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전적인 성격의 시책임

28) 조손가정 아동 학습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거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조손가정 아동(1층)의 학습수당을 지원하는 시책임
- 읍, 면, 동에 직접 대상자 및 공무원 직권신청을 통해 시청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보호결정 통지가 확정되면 급여가 지급됨
- 지원내용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조손가정(1층) 아동 학습비 지원으로 세대당 월 50천원이 본인계좌로 입금됨
- 조손가정 아동학습 수당은 2010년 21명에서 2014년 3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원금액은 2014년 22백만원임

<표 Ⅲ-29> 조손가정 아동 학습수당(2010~2014)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손가정아동학습 수당 대상자	21	28	32	26	33
지원금액	7	10	13	11	22
도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조손가정 아동학습 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음
 - 조손가정 아동 학습수당의 경우 월 50천원 지원이 본인계좌로 현금지원 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 등 학령기별 개별 지원이 아닌 일괄지원에 따른 학습수당의 적정성을 문제제기 할 수 있음
 - 학습수당 지원에 따른 학원비 지출 증빙 여부에 대한 정산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연간 4개월 월 7만원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의 참고서 지원 등의 개별 사업을 감안할 경우 지원액 및 대상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배움지도사 등 가정파견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학년일 경우, 저소득층이라는 현실 여건으로 배움지도사에 대한 가정파견 자체를 꺼리고 있으므로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과 사회보장사업 비교

1)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개념적 정의를 할 수 있음

<표 Ⅲ-30>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분류 및 분류기준

유형 분류 체계	분류 기준		사업 기획 주체	재원 분담 비율	관리 유형	사업 성격	사업 기간	회기내 사업 기간	지속성
	기존 유형								
유형 분류 체계	국가사업		중앙 정부 주관	중앙 정부 부담	위임 관리형	대상자 직접 지원형	장기 (3년 이상)	장기 (년간)	대상자 고정형 (예산 확보형)
	이양사업			지방 정부 부담	위탁 관리	대상자 간접 (바우처)	중기 (1년이상 3년 미만)	단기 (분기/반기/회기)	대상자 고정형 (예산 소진형)
	지자체 자체사업	직접 수혜	지방 정부 주관	혼합	자체 관리	민간 제공 주체 보조형	단기 (1년 미만)	SPOT 형	혼합형
		간접 수혜				기타 (행사 행정지원)	비정기	-	기타
행사 행정비	행사 행정비								
활용 목적	광범위한 조사 및 정보수집		조사 및 수집	조사 및 수집	조사 및 수집	수집 및 현행화	수집 및 현행화	수집 및 현행화	수집 및 현행화
주요 활용 주체	중앙 정부		중앙 정부	중앙 정부	중앙 정부	관리 기관	관리 기관	관리 기관 및 이용자	관리 기관 및 이용자

자료 : 함영진 외(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 통합관리 체계 방안 마련 연구. p.36. 재구성

- 자체사업에 대한 유형을 토대로 직접수혜, 간접지원, 행사 및 행정지원으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의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

<표 III-31> 지자체 사업 유형

구분	도식화	설명
직접 수혜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대상자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대상자에게 현금·현물서비스 지원
간접 지원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복지 시설 → 대상자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복지대상자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행사·행정지원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지역일반 (행사 및 행정)	지자체의 복지 관련 행사 및 행정업무 지원

자료 : 함영진 외(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 통합관리 체계 방안 마련 연구. p.28.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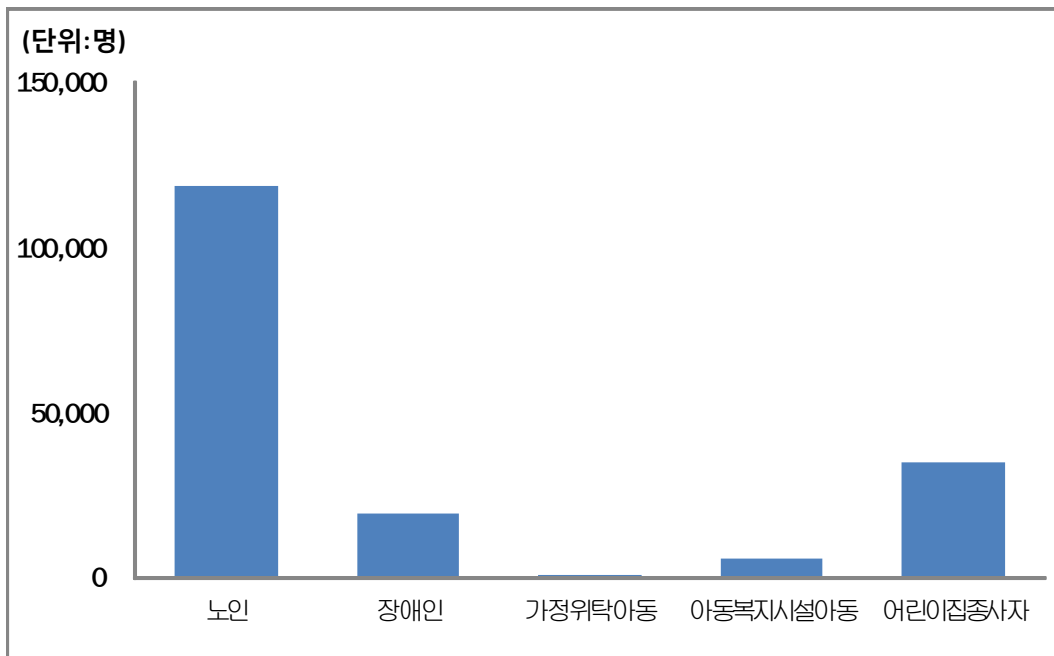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 현금성 추진 사업은 대상별로 보면 영유아, 아동·청소년, 조손가정, 장애인, 노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Ⅲ-32>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분석

대상별	사업명	
영·유아 (6개 사업)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어린이집 조리원·운전기사 인건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 향상비	
아동·청소년 (15개 사업)	가정위탁아동 (3개 사업)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0개 사업)	아동교통비 아동학습비 아동건강검진비 아동참고서구입비 아동문화활동비 아동정서교육비 아동대학입학금 명절부식비 아동간식비 아동상해보험가입비
	지역아동센터 (2개 사업)	추가운영비 조리원 지원
조손가정 (2개 사업)	조손가정수당 조손아동학습수당	
장애인 (2개 사업)	중증장애인교통비 1급 장애인 추가 수당	
노인 (3개 사업)	장수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 전체 현금성 지원사업은 보전적 수당의 성격으로 주로 인건비, 생활 안정 보전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아동과 관련 아동양육보호기관 입소 아동의 경우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그 밖에 조손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원 사업을 대상별로 구분하면 어르신인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8,861명이 지원되어 가장 많은 수혜율이 나타났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 5,644명, 장애인 13,901명, 가정위탁아동 892명,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35,172명으로 나타남



[그림 III--1]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 지원 현황

- 현행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사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와 지원 금액 등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음
 - 현행 복지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양육비를 수당으로 지급

하고 있음. 단,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으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5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교육비는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연간 5만원과 분기별 교통비 86,400원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별로 중앙부처와 비교하면 서로 지원 분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전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음
 - 가정위탁아동과 관련 중앙부처는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심리치료비, 상해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반면 제주도의 자체 사업은 월동비, 문화활동비,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과 관련 중앙부처는 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등이 있는 반면, 제주도는 1급장애인 추가수당,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 등이 있음
 - 노인과 관련 중앙부처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이 있는 반면, 제주도는 장수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등의 지원이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중앙부처는 기본운영비, 특성화에 따른 추가운영비가 지원되는 반면, 제주도는 종사자 1인당 추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어린이집과 관련 중앙부처는 교사처우개선, 농어촌보육교사·취사부·특별근무수당 등의 지원이 있는 반면, 제주도는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수당,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미지원시설 4대 보험료 지원, 능력향상비 등 별도의 추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Ⅲ-33>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와 중앙부처 사업 비교

구분	중앙부처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월 12만원) -디딤씨앗통장(최대 월 3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연 6만5천원)	-월동대책비(연 1회, 15만원)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월 최대 4만원) (초 2만원, 중 3만원, 고 4만원)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단 4개월, 월 7만원)

<표 III-33>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성 급여와 중앙부처 사업 비교(계속)

구분	중앙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 18세 이상)	-1급 장애인 추가수당 (기초수급 및 차상위 4만원, 시설기초 2만원) (만 18세 이상 3~6급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어르신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단, 국민연금소득시 10~20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월 20만원)	-장수수당 (80세 이상, 월 25천원) -목욕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월 6천원) -이·미용료
지역 아동 센터	-기본운영비(월 402~557만원) -특성별 운영비 거점형(기본+월 140만원) 특수목적형(기본+월 60만원) 토요일운영(기본+월 45만원) 거점형(기본+월 140만원)	-추가운영비 지원 (종사자 1인당 월 10만원)
어린이 집	-교사 처우개선(월 17만원) (0~2세 영아반 교사 처우개선) -농어촌 보육교사 1명 지원 -농어촌 취사부 1명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림축산식품부 월 11만원)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수당(월 15만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지원시설 월 45만원, 미지원 10만원) -미지원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월 3만원) -읍면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 (월 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 (도시지역 19만원, 농어촌 8만원, 원장, 조리원 등 14만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월 15만원)

2) 현금성 급여 통합 관리 필요성

- 사회보장기본법과 동법의 시행령 등을 통해 2015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관련 유사·중복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중앙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가운데 경상적 수요사업은 67개로 그 가운데 사회복지영역은 총 45개 사업임
 - 경상적 수요사업은 크게 사회복지(45개), 문화관광(5개), 농림수산(14개), 공공근로(1개), 여성인력개발(2개)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의 경상적 수요사업은 크게 노인, 장애인, 아동, 그 밖의 복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III-34> 2014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경상적 수요사업)

구분	대상사업	
노인 복지비 (10개 사업)	경로당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운영
	경로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회관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활성화
장애인 복지비 (17개 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정신지체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장애인가동 달팽이관 수술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표 III-34> 2014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경상적 수요사업)(계속)

구분	대상사업	
아동 복지비 (9)	아동시설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아동급식	입양기관 운영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연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그밖의 복지비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미혼모중간의 집 운영, 통합)
	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운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숙자 보호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가운데 비경상수요사업은 노인시설운영, 노인복지관 신축,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2014년 노인시설 가운데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음

<표 III-35> 2014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비경상적 수요사업)

비경상적 수요 사업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관 신축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운영

주 : 굵은 글씨 2015년 1월 1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노인시설은 노인양로시설만 해당)

자료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2014.4). 안전행정부

-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별 지역별 보조율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법령상 다음과 같은 보조금 사업이 있음
 - 보조율은 크게 50%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최소 70%에서 80%까지 사업별로 다양한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음

<표 Ⅲ-36> 법령상 보조금 사업(복지분야)

보조율	대상사업	
50%	서울 50%, 지방 70%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복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서울 : 사업비의 2/3 지방 : 100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자료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2014.4). 안전행정부. 재구성

- 2015년 예산편성기준 제시와 관련 복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사업 구조를 단순화 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함
 - 대표적인 사업으로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문화,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의 감축을 이미 예고하였음(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011년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평가를 통해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 서비스 제공의 경우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사업 및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 지원 사업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합하였음
- 게다가 2005년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49개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시행된 분권교부세의 경우 2015년 전면 폐지,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과 관련 유사·중복·보전적 부문에 대한 사업별 통합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배경으로 현금성 급여 관리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분석해 볼 수 있음
- 우선, 현금성 급여 통합 관리에 있어 제약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중첩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공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 명확한 실정임
 - 둘째, 사회서비스 보장(법률 제23조), 소득보장(법률 제24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셋째, 비용부담(법률 제28조)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반면, 분권교부세 통합에 따른 현금성 급여 통합 관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복지사무와 관련 실정법제상 원칙적 사무이원론(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 둘째, 지역 특수성을 고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계획이 단독적으로 추진되기보다 보건복지부에 지역계획 제출과 국가 단위 사업 변경 반영, 당해년도 추진결과 실적 보고 및 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셋째, 지방과 정부와의 사무위임관리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음
- 넷째,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현금성 급여를 실시하는데 있어 재원 조달·배분 등에 있어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음

IV.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 현재 사회보장사업은 총 17개 부처, 36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분야별로 보면 교육사업 43개, 보호·돌봄 39개, 요양돌봄 16개, 건강의료 67개, 고용 52개, 주거 34개, 문화여가 6개, 생활지원 47개, 생계 29개, 재해보상 27개 등임
 -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1개, 고용노동부 36개, 교육부 21개, 국가보훈처 37개, 국토교통부 14개, 금융위원회 4개, 기획재정부 2개, 농림축산식품부 8개, 문화관광체육부 5개, 미래과학창조부 9개, 방송통신위원회 3개, 보건복지부 140개, 산림청 3개, 산업통상자원부 6개, 소방방재청 1개, 안전행정부 2개, 여성가족부 44개, 중소기업청 8개, 통일부 10개, 해양수산부 2개, 환경부 4개임
 - 대상별로 보면 영유아 대상 17개, 아동 7개, 청소년 21개, 전체 아동 49개 등 아동분야는 총 94개 사업이며, 청년 대상 8개 사업, 중장년 9개 사업, 노년 37개 사업, 전체 성인 142개 사업 등 성인 대상사업은 196개 사업이 있으며, 일반 사업 70개 등 총 360개 사회보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현금성 급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장수수당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5,825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11년 제주도비 100% 지원에서 2012년 복권기금 97%, 2013년 복권기금 94.2%, 2014년 복권기금 91.1%를 각각 매칭하여 지원하였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료는 2014년까지 총 21,788명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 복권기금 97%, 2013년 복권기금 94.2%, 2014년 복권기금 91.1%로 각각 매칭하여 지원하였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이·미용료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21,788명이 지원 받았으며, 2012년 복권기금 97%, 2013년 복권기금 94.2%, 2014년 복권기금 91.1%가 각각 매칭되었음

-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13,901명, 3,63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1급 장애인 추가 수당 지원 규모는 2014년까지 총 5,664명, 1,367백만원으로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가정위탁아동 월동대책비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1,355세대 20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규모는 2012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4년까지 총 892명, 23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교통비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609명, 19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비 지원규모는 2011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512명, 16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1,282명, 3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도서구입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1,150명, 4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1,385명, 111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정서교육비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1,124명, 27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61명, 18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 명절부식비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1,568명 1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은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014년까지 총 620명, 18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사업 지원 규모는 2014년까지 총 272명, 41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규모는 2014년까지 총 2,711명, 8,27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 규모는 2014년까지 총 7,780명, 2,801백만원으로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읍면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2014년까지 총 2,637명, 1,589백만원으로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원 사업은 2014년까지 총 21,772명, 26,228백만원으로 제주도비 100%가 지원되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총 20개소, 240백만원으로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212개소, 35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지원사업은 2014년도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72개소, 258백만원으로 제주도비 100%가 지원되었음
- 조손가정 수당 지원 규모는 2014년까지 총 280세대, 10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가 지원사업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조손가정 아동 학습수당 지원 사업은 2014년까지 총 140명, 6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도비 100% 지원 사업임

2.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보장사업과 관련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과 대상이나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임
 - 수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등 동일한 대상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향후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는 어르신,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다층화 될 것임
 - 제3기 지역복지계획의 경우 제주도 전체 인구의 증가와 달리 영유아, 아동·청소년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장년층의 꾸준한 증가를 예측한 바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최우선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연도별로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제주도민 전체 인구의 약 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지역 여건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주도 자체 특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현금성 급여는 총 28개 사업 25,402,126백만원으로 사업비 가운데 노인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현금성 급여 지원 대상은 직접수혜로써 노인, 장애인, 가정위탁아동, 조손가족이 있으며, 간접 및 행정 기타비로 어린이집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 아동, 장애인, 조손가족,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은 직접적인 복지 대상자이며, 어린이집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 가운데 한 영역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원되었음

- 중앙정부와 제주도 현금성 급여 사업과의 유사성 여부를 분야별로 살펴 보면 보육, 요양, 생활지원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앙정부 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교육비, 학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등이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 장수수당 등이 해당됨
- 제주도 사업과 중앙정부사업과의 유사성은 가정위탁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장수수당, 장애수당 등이 있음

<표 IV-1> 유사성이 발견되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구분	중앙정부 보장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	지자체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중앙정부 사업
교육	교육비/학비 지원 학용품비/교복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보육	어린이집 지원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생활지원	장수수당 장애서비스	장수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재해보상	보훈	장애수당

- 이를 토대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보장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사회보장사업의 해당 법령에 따라 개별 조례를 마련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사업과 차별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현재 보전적 성격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도록 권고될 예정으로 사전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합 등의 조정이 필요함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장사업과 관련 대상자별, 만족도 등 전반적인 분석이 요구됨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하여 대상자별, 지역별 포괄적인 욕구조사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보장의 경우 중앙정부 사업을 전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사회보장과 관련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사회보장사업의 명칭 및 대상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 현행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영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 사업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각각 개별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일 대상, 동일 사업의 경우 사업명 등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며, 지원 범주, 지원 대상에 대한 통합 규정이 필요함
- 넷째, 현금성 급여 사업의 경우를 지양하고, 현물 급여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사업에 있어 현금성 급여는 재원 집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우므로 예산 지원에 따른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현물 급여 또는 바우처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됨
-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금성 급여와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단위의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중복을 검토하였으나, 복지분야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의 현실화 등은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함

부록

<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구분 >

구분	사업명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영구임대주택공급 · 국민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임대주택공급 ·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용자) · 주거환경 개선 지원(용자) · 주거현물급여(집수리)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 슬레이트처리지원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그린홈)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신재생에너지 지원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 저소득층 연탄보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 보증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 임금채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미소금융 · 햇살론 · 바뀐드림론 · 새희망홀씨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 양곡할인 · 사랑의 그린PC · 문화누리카드(문화통합이용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 실업급여제도 ·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 희망리본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자활근로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자활장려금 · 근로장려금(EITC) · 내일배움카드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구 분	사 업 명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정년연장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년 취업 인턴제 ·시니어창업지원 ·장년 취업아카데미 ·사회공헌활동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청년 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인턴지원 ·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취업사관학교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영양플러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고운맘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맘편한카드) ·출산비용지원 ·요양비(출산비)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고 싶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급여지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
우리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시간제 보육료지원
어린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국가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건강검진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단체불소도포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위탁아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아동지원
방과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구 분	사 업 명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고교학습비 지원 ·방과후 자유 수강권 ·급식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유형)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이공계)	·드림장학금 ·튼튼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학교우유급식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아동급식지원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 ·디딤돌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드림스타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지역사회청소년 임시보호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 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청소년인터넷게임 중독 치료비 지원 ·WEE클래스·센터·스쿨 ·학생안전강화 학교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활동지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제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금 상한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제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 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건강검진제도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알코올상담센터(중독관리센터) 이용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재가암관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	
어르신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일자리 지원	

구 분	사 업 명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 ·노후설계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지원(시범)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고령층 정보화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 치료 관리비	·치매 검진 지원
어르신의 눈과 치아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실명 예방 ·노인틀니 지원	·노인임플란트 지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가 궁금할 때 또는 감면받고 싶을 때(어르신, 장애인)	·요금감면제도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때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장애아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지원고용형기업연수제 (고등학생 기업연수)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관리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 분	사 업 명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활동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과건 ·장애인주택특별(우선)공급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무료법률구조제도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명세를 적용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 수당 ·국가유공자 등 재해위로금 ·6.25자녀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독립유공자 등 영주귀국 정착금 ·재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재가복지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민영교통시설 이용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업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등 학습보조비 지급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형태나 상황에 처한 가족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자녀양육비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산모모신·출산비(맘편한카드)

구 분	사 업 명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 ·주거지원(주택특별공급)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여성 인턴 ·결혼이민자여성 직업교육훈련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지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대학 학자금 융자 ·복지사업(장학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 보험 ·가사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의상자 지원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사회보장 지원 ·정착금 지원 ·생활안정 지원 ·주택알선 지원	·교육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등 복지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할린 한인지원 ·원폭 피해자 급여 ·위안부 피해자 지원	·진폐근로자 보호 ·한센 피해자 지원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 사업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4. 재구성

참고문헌

강혜규(20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연계와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토론회 자료집(2015.4.1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김재호·이근재·이상호·조성규·최병호(2013),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김문길·윤상용·송치호·김성아·이주미(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 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4.9.18), 보도자료

안전행정부(2014.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하)」,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안전행정부(2014.7),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정영태·강창민·고승한(2014),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함영진·김경준·김성은·이인수(2013), 「국가복지사업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II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특징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함영진·이대영·김경준·이인수(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 통합관리 체계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복지로. www.bokjiro.go.kr

재정고. lofin.mospa.go.kr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Cash Benefits in the Area of Welfare in the Jeju Region

Yung-tae, Jung

Keyword : Welfare policy, cash benefits, Social Security, Customized Welfare, Selective welfare

The paradigm of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has shifted from selective to universal and then to customized welfare. Recent amendments to social security laws, the social welfare program will mark a turning point for the social welfare program, such as partial polic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h benefits policy as an independently specialized project, among social welfare policies alig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after the 2005 decentralization and transfer of social welfare projects.

The policy consists of the direct provision of benefits to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nd the indirect provision of benefits to those involved in the project. Cash benefits are variously provided for up to 12 months, but not shorter than four months, on a monthly basis.

However, the 2015 government policy has been announced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newly revis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aligned with the needs of relate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therefore analyzed the status of cash benefits in the Jeju region, prior to the future reform of the cash benefits policy.

연구진

연구책임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책연구 2015-03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5년 7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도 아연로 253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415-0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자료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